電子工業振興法改正法律

議決主文

電子工業振興法改正法律案을 다음과 같이 議決한다.

1. 改正法律 提案理由

가. 電子技術의 急速한 発展과 다른 産業에의 波及効果 拡大로 電子工業의 構造高度化가 불가피하며 특히 半導体·컴퓨터 등 核心技術部門의 開発이 緊要함.

나.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現行의 支援制度를 合理的으로 改編하고 国家的 次元에서 電子工業育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体系의 確立이 시급히 要請되고 있음.

2. 改正法律 主要内容

가. 全産業의 高度化를 促進하는 核心部門으로 浮刻된 컴퓨터를 電子機器 등의 범위에 포함시킴(案 第2条)

나. 現在와 같이 画一的으로 支援하는 "電子工業振興基本計画"体制를 品目의 特性과 開発의 段階에 따라 特性에 맞는 支援策을 講究할 수 있도록 "電子工業高度化計画"体制로 変更함(案 第3条)

다. 電子工業高度化計画의 효율적인 推進을 위한 財源의 確保를 위하여 "電子工業振興基金"을 設置함(案 第6条)

라. 商工部長官은 研究開発의 効率性 提高, 施設의 適正化 및 部品의 規格化 등 電子工業의 合理化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도록 함(案 第10条)

마. 電子工業高度化計画의 効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韓国電子工業振興会를 特殊法人으로 함(案 第13条)

바. 罰則을 現実化 함.(案 第18条)

法律 第3,436号

電子工業振興法改正法律

電子工業振興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電子工業振興法

第1條 (目 的) 이 法은 電子工業의 振興과 高度化를 促進함으로써 電子工業의 国際競爭力을 強化함과 아울러 国民経済의 발전과 国民生活의 향상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 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子工業"이라 함은 電子機器 등을 製作(加工을 포함한다)·組立하는 工業을 말한다.
2. "電子機器 등"이라 함은 電子管·半導体素子 기타 이와 類似한 部品을 사용하여 電子運動의 特性을 応用하는 機械·器具(電子計算組織을 포함한다) 및 이에 주로 사용되는 部品과 材料를 말한다.
3. "電子計算組織"이라 함은 人力·出力演算·制御 및 記憶의 機能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情報資料를 数学的·論理的으로 처리하는 機械組織(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그 機械組織의 효율적 動作을 위한 利用技術組織(시스템소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第3條 (電子工業高度化計劃의 樹立) ① 商工部長官은 電子工業의 高度化를 推進하기 위하여 다음 각号의 事業에 대한 電子工業高度化計劃(이하 "高度化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公告한다.

1. 国内에서 生産技術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外国에 比하여 그水準이 현저하게 낮아 生産技術의 開発이 특히 필요한 事業(이하 "研究開発事業"이라 한다)
2. 国内에서 生産이 開始되지 아니하였거나 生産量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서 生産의 開始 또는 生産量의 增加가 필요한 事業(이하 "工業化事業"이라 한다)
3. 国内에서 生産은 되고 있으나 性能 또는 品質의 改善, 生産費의 節減등 生産合理化가 필요한 事業(이하 "合理化事業"이라 한다)

② 第1項의 高度化計劃에는 다음 각 号의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研究開発事業
   가. 開発의 内容·目標年度 및 所要資金
   나. 研究開発의 促進에 관한 事項
2. 工業化事業

가. 生産開始年度·目標年度의 生産数量 및 所要資金

나. 生産의 開始 및 生産量増加의 促進에 관한 事項

3. 合理化事業

가. 合理化의 内容·目標年度 및 所要資金

나. 生産合理化의 促進에 관한 事項

③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高度化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電子工業相互間의 관련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行政機関 또는 専門機関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를 変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4條 (登録등) ① 電子工業을 営爲하고자 하는 者는 商工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에 登録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을 한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登録事項을 変更하거나 事業을 休止 또는 休止한 事業을 再開하고자 할 때에는 商工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5條 (登録의 取消) ① 商工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각号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4條의 登録을 取消할 수 있다.

1. 虚偽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登録을 한 때.

2. 第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虚偽의 申告를 한 때.

3.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違反한 때

4. 第6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工業振興基金의 支援을 받아 이를 다른 目的으로 사용한 때.

5.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虚偽의 보고를 한 때.

6.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입 또는 検査을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이 取消된 者는 그 登録이 取消된 날로부터 1年 이내에 다시 登録을 할 수 없다.

第6條 (電子工業振興基金의 設置 등) ① 政府는 高度化計劃을 推進하기 위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電子工業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基金은 다음 각号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政府 이외의 者의 出捐金

2. 借入金

3. 基金의 運営으로 생기는 収益金.

③ 基金은 商工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 다만, 商工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1條의 韓国電子工業振興会로 하여금 基金을 運用·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④ 基金은 다음 각号의 事業에 사용한다.

1. 第3條의 高度化計劃의 시행을 위한 事業의 支援

2. 電子工業의 海外投資促進의 支援

3. 原資材의 共同備蓄資金의 支援

4. 技術導入促進의 支援

5. 電子機器 등에 관한 国内·外 展示会의 開催·周旋 및 参加支援

6. 디자인 및 模型의 開発支援

7. 第1号 내지 第6号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의 支援

8. 기타 電子工業의 高度化를 推進하기 위하여 商工部長官이 指定하는 事業의 支援

⑤ 基金의 管理者는 基金의 運営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負担으로 資金을 借入(国際機関·外国 또는 外国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하거나 物資導入을 할 수 있다.

⑥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電子機器 등의 国産化促進) ① 政府 또는 政府投資機関은 毎会計年度에 필요로 하는 電子機器 등을 輸入함에 있어서 당해 電子機器 등의 国産化 与否와 관련하여 미리 商工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第1項의 電子機器 등의 対象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電子工業의 海外進出促進) 政府는 電子工業의 海外進出을 促進하고 이에 필요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第9條 (電子工業団地의 造成) ① 商工部長官은 電子工業의 育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電子工業団地의 造成을 建設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工業団地의 造成의 運営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電子工業의 合理化措置) 商工部長官은 電子工業의 合理化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事業者에 대하여 다음 각号의 事項에 관하여 필요한 勧告 또는 措置를 할 수 있다.

1. 電子機器 등의 需給調整

2. 生産施設의 適正化

3. 研究開発의 共同化

4. 技術 및 技術人力의 효율적인 活用

5. 電子機器 등의 種類 및 規格化

6. 기타 商工部令으로 정하는 電子工業의 合理化에 관한 事項

第11條 (韓国電子工業振興会) ① 事業者는 電子工業의 振興을 위하여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国電子工業振興会(이하 "振興会"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 振興会는 法人으로 한다.

③ 事業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振興会의 会員이 된다.

④ 振興会의 定款記載事項 기타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振興会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 社団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⑥ 振興会가 아닌 者는 韓国電子工業振興会 또는 이와 類似한 名称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12條 (事 業) 振興会는 다음 각号의 事業을 한다.

1. 高度化計画의 推進

2. 電子機器 등의 国産化促進

3. 電子機器 등의 輸出振興 및 国際協力

4. 電子工業振興을 위하여 商工部長官

이 委託하는 事業

5. 기타 定款으로 정하는 事業

第13條 (補助金의 支給) 政府는 高度化計劃을 推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振興会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14條 (事業者의 研究開発事業의 調整) ① 商工部長官은 事業者가 設立한 研究機関이 高度化計劃의 圓滑한 推進과 研究開発의 促進을 위하여 特定研究事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을 받은 特定研究事業에 대한 支援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보고·検査) ① 商工部長官은 이 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業者 또는 振興会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命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事業者 등의 事業所·事業場·工場이나 倉庫에 출입하여 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検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検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権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16條 (権限의 委任·委託) 商工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権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振興会에 委託할 수 있다.

第17條 (罰 則) ① 다음 각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300万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虚偽의 보고를 한 者

2.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입 또는 検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

② 第11條 第6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万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8條 (両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従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17條 第1項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同項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19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振興会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 公務員으로 본다.

第20條 (施行令) 이 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設立된 社団法人 韓国電子工業振興会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国電子工業振興会로 본다. 다만, 이 法 시행일로부터 6月 이내에 그 定款을 変更하여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